

歐美제국의

석유세제

1. 개요

歐美 제국의 석유 세제를 보면 EC에서는 원차제 무세 원칙에 따라 정제용 원유에 대한 수입관세가 무세이며, 美國은 국산원유 보호 관점에서 이들 원유에 대해 매우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석유 소비세의 경우를 보면, 美國에서는 석유 제품에 대해 연방세외에 주세, 시세 등이 부과되어 있는데 세율은 직접세 중심의 조세체제를 반영, 일본과 EC의 석유 소비세율에 비해 낮다. 반면 EC에서는 모두 국내소비세외에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세율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특히 간접세 중심의 조세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 등의 국가는 고율이다.

2. 석유관세

EC에서는 1986년 이후 공통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EC 회원국내(역내)에서의 수입과 다른지역(역외)에서의 수입에 따라, 관세율이 달리 정해진다. 역내에서의 수입은 原油, 제품 모두 무세이지만, 역외에서의 수입에 대해서는 原油는 무세이지만 제품은 3.5%에서 6%가 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역외에서의 제품수입에 대해서는 ①개별 경감세율 적용, ②로마 협정 국가 및 유럽자유무역 연합국(EFTA)에 대한 면세, ③개발도상국 115개국에 대해 일정수량까지 면세 단, 작국에서의 수입량 합계가 한도를 초과한 경우 및 한 국가에서의 수입이 제품별 한도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회원국의 요청에 의해 통상 역외관세 적용의 3가지 특별조치가 있다.

한편 美國의 석유관세 제도는 자유세계 국가와 공산권 국가로 구분해 차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공산권 국가에서의 수입에 대한 관세율은 자유세계 국가로부터의 수입 관세율에 비해 原油, 중유가 4배, 기타 제품이 2배이다. 또 자유세계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적용되는 관세 가운데 原油와 중유는 비중 API 25 미만일 경우 배럴당 5.25센트, API 25이상인 경우 배럴당 10.5센트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는데, 이것은 美國이 베베수엘라로부터의 중질원·중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에너지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서반구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높은 우선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3. 石油 소비세

EC에서는 일반적으로 석유제품에 대해 국내 소비세와 상품전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비해 미국에서는 휘발유, 경유, 자동차용 석유 가스만을 대상으로 국내 소비세가 부과되며 도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특징이다.

세율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예를들면 고급휘발유의 경우 1986년 4월 현재 英國 19.38펜스/L, 西獨 53마르크/100L, 프랑스 261.9프랑/100L, 美國 18센트/미국 갤론이다. EC의 경우 여기에 英國 15%, 西獨 14%, 프랑스 18.6%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 프랑스에서는 이외에 탄화수소탐사기금 및 석유 연구소 부과금 등이 부과되고 있다.

국내 소비세의 용도는 西獨이 휘발유, 자동차용 경유에 대한 광유세의 약 50%, 美國이 휘발유, 경유세의 100%를 도로재원에 사용하며, 프랑스에서는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휘발유, 경유에 대한 소비세의 20%상당액을 도로재원에 이월시키고 있다. 그밖에 西獨에서는 난방유에 대한 광유세의 수입이 전액 에너지 대책의 특정재원으로 되어 있고

프랑스의 부과금은 모두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특정 재원이다. □ <주간 석유에너지 정보>

〈表 - 1〉 歐美의 석유관세율

| | E C | | 美 國 |
|-------|-----|--------------------------|--|
| | 域內 | 域 外 | 관 세(센트/배럴) |
| 原 油 | 무세 | 무 세 | API 25 미만 : 5.25 API 25 이상 : 10.5 |
| 휘 발 유 | 무세 | 6% | 5.25 |
| 나 프 타 | 무세 | 석유화학용 : 면세 제 유 용 : 6% | 10.5 |
| 등 유 | 무세 | 6% | 자동차용 : 5.25 기 타 용 : 10.5 |
| 경 유 | 무세 | 3.5% | 자동차용 : 5.25 기 타 용 API 25 미만 : 5.25 API 25 이상 : 10.5 |
| 경질중유 | 무세 | 3.5% | API 25 미만 : 5.25 |
| 중질중유 | 무세 | 3.5% | API 25 이상 : 10.5 |

〈주〉 관세율은 최혜국에 대한 세율이며 다른 국가에 대한 관세는 이 관세율의 2배의 세율을 적용.

〈表 - 2〉 歐美의 석유소비세

| 유 종 | 英 國 (펜스 / L) | 프 랑 스 (프랑/100L) | 西 獨 (마르크/100L) | 美 國 (센트 / 갤론) |
|---------|---------------------------|---|--------------------------|-------------------------|
| 고급휘발유 | 탄화수소유세 19.38 부가가치세 15% | 국내소비세 261.90 부 과 금 9.19 부가가치세 18.6% | 광 유 세 53 부가가치세 14% | 연방세 9 주 세 8 시 세 1 |
| 난 방 유 | 탄화수소유세 1.1 | 국내소비세 35.87 부 과 금 0.81 부가가치세 18.6% | 광 유 세 1.66 부가가치세 14% | - |
| 경 유 | 탄화수소유세 16.39 부가가치세 15% | 국내소비세 128.42 부 과 금 7.65 부가가치세 18.6% | 광 유 세 44.26 부가가치세 14% | 연방세 15 주 세 10 |
| 경 질 중 유 | 탄화수소유세 1.1 | 부가가치세 18.6% | 광 유 세 1.66 부가가치세 14% | - |
| 중 질 중 유 | 탄화수소유세 0.77 | 국내소비세 27.68 부가가치세 18.6% | 광 유 세 1.43 부가가치세 14% | - |

〈주〉 美國의 주세는 뉴욕주의 세율임. 세율은 모두 1986년 4월 현재.